



고용노동부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대한건설협회장

(경유)

제목 질의 회신

1. 관련 : 'E-9 상용직 외국인 근로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이 아님'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또는 공문회신 요망(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-83, 2024. 4. 26.)
2. 귀 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은 E-9 비자를 가진 상용직 외국인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**건설 일용근로자**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 - 이때, **일용 근로자**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**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,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**를 말합니다.
 - 따라서 **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근로의 형태가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지 않음**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

주무관

강혜림

행정사무관

유종호

과장

전결 2024. 5. 17.

이경근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재예방정책과-1605 (2024. 5. 20.)

접수

우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(반곡동 771-62 산업안전보건본부)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8941 팩스번호 044-862-8075 / lovelynaru@korea.kr / 비공개(5,6)